

## 기획 논문

# 상호부조 협동금융의 전개와 マイクロクレ딧\*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중심으로

오미일 \_부산대학교

### 논문요약

빈곤층의 자립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비영리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층이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 청년연대은행 토닥과 같은 공제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상호부조 협동금융을 실천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과 토닥은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연간 출자금의 10%로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단위조합으로는 어려운 금융인 전망 구축과 의료공제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에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김진희 이사장, 늘풀공제협동조합의 정덕용 연제자활센터장, 우리가남이가공제조합의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과 김선복 주임, 이성조 前 부산진구자활센터장과 이귀원 대천마을학교 교장, 박우정 청어당 원장 등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실천하고 있다. 재단 형태의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창업 대출과 컨설팅을 통한 자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활공제협동조합과 토닥은 생계자금 대출을 주요 사업 범주로 설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상호부조 협동금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실행하는 자율적 경제운동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 주요어: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자활공제 협동조합,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청년연대은행 토닥

## 1. 서론

자본주의 역사에서 기억되는, 근래의 가장 큰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황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단된 2007년 금융위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는 모두 사회적 자본인 금융의 사회로부터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공황을<sup>1)</sup>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루스벨트가 내놓은

---

1) 대공황은 1920년대 중반경부터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토지, 일차 생산품, 석유, 금, 미술 골동품 등의 투기에서 시작된 금융 버블에서 비롯되었다. 주식시장에도 대규모 투기가 일어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 1929년 10~11월 뉴욕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주가 폭락이 일어나면서 금융공황이 시작되었다. 1933년 경 미국의 주가는 1929년 9월경에 비해 절반 이하로 폭락했으며 공업 부문 실업률은 37%를 넘었고, 거의 1만 개에 이르는 금융기관이 도산했다(우자와 2008, 156-157).

뉴딜(New Deal) 정책의 핵심은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와 은행법 제정이었다. 이 은행법은 이후 ‘글래스-스티겔법(Glass-Stegall Act)’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중앙은행 권한의 대폭 강화, 은행 업무와 증권 업무의 분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예금보험제도의 창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즉 공황을 일으킨 주요 요인인 은행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혁이었던 것이다(우자와 2008, 159). 그러나 1999년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램-리치-브라이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실시됨으로써 은행, 투자은행, 보험업의 영역 간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래스-스티겔법의 개혁은 무색화되었다.<sup>2)</sup>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앤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이 “백년에 한 번 올 신용 쓰나미”라고 표현했던 2007년 금융위기의 주범은 주택대출채권을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기술을 가진 세력, 즉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이 구축한 ‘그림자금융 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찬근 2009, 25-77). 그런데 이 그림자금융 시스템의 양성화는 결국 1929년 대공황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제정한 ‘그램-리치-브라이리법’에서 비롯되었으니, 2007년 금융위기의 단초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 2) 그러나 글래스-스티겔법의 내용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국책은행의 대리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항과 투자은행의 예대업무 금지 규정은 존속됐다. 그램-리치-브라이리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통합법과 비슷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 3) 뉴딜정책에서 만든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사이의 울타리를 다시 없애는 일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던 이가 바로 시장민족주의를 부르짖은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

2007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돈을 신용협동조합, 윤리은행(Ethical bank) 등 지역 기반의 작은 금융기관으로 옮기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계좌이동(Move your money)’ 캠페인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sup>4)</sup> 계좌이동 캠페인이 돈을 옮기라고 추천한 금융기관은 ‘해가 날 때에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sup>5)</sup> 종래의 금융기관과 달리,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는 기관들이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탐욕적인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금융으로써 회생시키기보다 사회적 금융을 육성하는 대안을 주장해왔다.<sup>6)</sup>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며

---

드먼(Milton Friedman)이었고 그 결과가 ‘2007년 대참사’였다(우자와 2014, 30).

- 4) [www.moveyourmoneyproject.org](http://www.moveyourmoneyproject.org) 참고. 처음에는 JP 모간, 씨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르고(Wells Fargo) 등 4개 대형은행이 대상이었으나 이후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坦리도 추가되었다. 개인 고객뿐 아니라 지방정부, 연금 펀드, 대학 등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18개월 동안 400만 개가 넘는 계좌가 소형은행으로 이동되었다(문진수 2013, 22; 김해정 2014, 30-31).
- 5) 이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은행가들의 속성을 대해 야유한 말이다.
- 6)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어 73일간에 걸쳐 전개된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본산으로 대형 금융기관(투자회사)이 지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계좌이동 캠페인은 바로 월가점령시위를 이끈 비영리단체의 후속 운동이다. 영국 시민사회에서도 2012년 3월을 계좌변경집중기간(MYM Month)으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운동에 동참했다. 계좌 변경처로 추천된 기관은 빙곤 완화, 유기농업, 지역개발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트리오도스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문진수 2013, 24). 즉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목적조직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을 말한다.<sup>7)</sup>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융(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 공통자본’<sup>8)</sup>을 주창한 우자와 히로우미는 금융을 교육·의료·사법·행정과 같은 제도자본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는 사회적 공통자본은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로 간주해 관료적으로 관리되거나 이윤 추구의

---

은 윤리은행, 내셔널와이드 등 50여 개의 사회재건기구(Building societies), 영국 전역에 걸쳐 600여 개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 그리고 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사회에 복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DFI) 등이었다(문진수. “소셜 파이낸스: 99%의 저항, Move your money.”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http://blog.makehope.org/smallbiz/636?category=0> 참고).

- 7) Nicholls, A. and C. Pharoah. 2007. “The Landscape of Social Finance.” Skoll Center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장종익(2013, 133)에서 재인용.
- 8) 사회적 공통자본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제도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우자와가 제안한 개념이다. 사회적 공통자본은 하나의 국가 내지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과 품격 있는 문화를 영위하고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는 사회적 공통자본을 크게 보아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도로·교통기관·상하수도·전력 가스 등), 제도자본(교육·의료·금융·사법·행정 등의 제도)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우자와 2008, 12-13).

대상으로서 시장 조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도로 전문화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과 매우 복잡하게 얹힌 금융의 경우, 다양한 시장의 구조적 제도적 조건을 정비하고 경제적 순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금융제도가 더욱 광범한 국제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리하다고 본다(우자와 2008, 170).

사회적 금융은 탈빈곤의 방법으로 금융위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안금융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 2007~2010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기관이 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자산도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김해정 2014, 33).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위기에 대항하여 최근 지역 규모의 경제를 사고하고 실천하는 대안금융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구체적인 목적과 수행 방식, 대상에 따라 사회 환경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기반을 만들어가는 사회목적투자,<sup>9)</sup>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개발금융,<sup>10)</sup> 빈곤층과 영세한 사회적

- 
- 9) 재무적 가치를 기대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기부나 자선과 달리 사회목적투자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의 한 방식이다. 투자자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여 사회와 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수익을 기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윤리 강령에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유익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문진수 2013, 47-48).
- 10)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대출 편의를

기업에 대한 소액 대출을 통해 이들의 자립 자활을 돋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금융 가운데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실업 극복과 자활을 위한 주요 금융 수단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마이크로크레딧은 1970년대 그라민은행에서 시작되어 성공함으로써 1980년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개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소액대출 영역에서 나아가 예금 이체, 보험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대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의 마이크로크레딧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주도층과 출자금 형성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비영리시민단체 혹은 종교계 복지법인 등이 정부·기업의 보조금(지원금)이나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빈곤층에게 소액대출과 함께 창업·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9년 그라민은행의 국내 지부로 조직된 (사)신나는조합, (사)함께만드는 세상이 설립한 사회연대은행(2003), 창원지역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설립한 사회복지은행(2003), 주로 탈북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열매나눔재단(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 소액대출사업이 성과를 보이자 정부에서도 보건복지

---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시민운동에 의해 지역채권자법의 지원 확대가 더욱 강화되었다(문진수 2013, 48).

부 주도로 희망기움뱅크 사업(2005)을<sup>11)</sup> 시작하여 사회적 금융에 나섰다. 또한 2008년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는 2009년 미소금금융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 (재)한국사회투자(2012)를 설립했다. 이 기관들은 주도세력이나 법인의 사회관(社會觀)에서 다양한 성향을 보이지만, 대개 사회적 기업과 저소득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マイ크로크레딧에 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sup>12)</sup>

그러나 근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경제적 약자층이 스스로 출자하여 공제(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때에 상호부조로 대출하는 방법이 실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각 지역자활센터를<sup>13)</sup>

---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개인에게 연 2% 이자로 대출해주며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경기인천자활광역센터 등 20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2010년 미소금금융중앙재단으로 통합되었다(조복현 2011, 56-57).

12) 대표적인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박종현(2011), 정영석·이기영(2013), 장종익·박종현(2013), 박종현·김낙현(2015), 권재열(2016).

13)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에 의해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각급 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자활센터는 대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중에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지정되었다. 자활센터는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근간으로 조직된 자활공제조합, 여기에 영향 받아 결성된 동지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2011), 청년연대은행 토다(2013), 그리고 주거공동체에서 출발한 공동체은행 빙고(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조합은 출자금이나 사업조직력 등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자율적이고 상호부조 형태의 ‘관계지향 금융’이란 점에서 앞으로 주목되는 부문이다. 저소득층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과 재단의 보조금(지원금)이 충분하게 제공되기 어렵다는<sup>14)</sup> 점을 고려하면 자율적인 상호부조 공제협동조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취약자들이 매달 소액을 불입하여 조성한 출자금으로 대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생활의 파탄을 막고 경제적 자립의 단서를 모색하는 풀뿌리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고찰해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늘품(부산 연제구)과 우리가남이가(김해) 공제(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자활공제조합에 영향받아 3포세대 혹은 5포세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의 각종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장의2 자활지원 제15, 16조 참조). 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248개, 부산에 18개가 설립되어 있다. 자활센터 가운데 일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공제조합을 조직하여 상호부조의 소액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14) 소액금융의 대출수요자를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2010년경 대략 7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들 중 약 1만 5,000명이 소액대출을 받았다고 하므로 0.2%만 혜택을 받은 셈이다(조복현 2011, 61-62).

대라고<sup>15)</sup> 불리는 청년들을 조직화하여 세대별 조합이란 새로운 모델을 개척한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검토할 것이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진영이 글로벌 자본주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조달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는 스페인 몬드리곤 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노동 인민금고와 공제조합,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협동단지의 협동기금과 협동신용은행, 캐나다의 데자르뎅 신협 사례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정태인·이수연 2013, 200-220, 226-233).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는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10), 협동조합기본법(2011) 등 법적 제도화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의 공급 주체를 정부, 공익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투자자, 상업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상호부조와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을 안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의 지속을 위해 사회적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협동금융 방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작업이, 아직 실험단계이지만 경제적 취약층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협동금융이

---

15) 3포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5포란 여기에 더하여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재단이나 기관에서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금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서 다수의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상호부조 금융

자활공제협동조합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일반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출자금을 조성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에게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조합이다(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팸플릿』. 1). 이 조합의 조직을 주도한 것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인데,<sup>16)</sup> 협회가 조합의 조직을 장려하기 이전에 이미 몇몇 지역자활센터 내에 상조회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 성남 해밀, 서울 광진 등 몇 곳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sup>17)</sup> 이러한

---

16) 지역자활센터는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6조에 의거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군별, 시도별로 조직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16개 구군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16년 6월 23일 이성조 전 부산진구자활센터장 인터뷰; <http://www.bsjahwal.or.kr> 참조).

17) 2016년 6월 17일 정덕용 연제지역자활센터장(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 교육이사,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서면인터뷰.

가운데 2009년경 이사회에서 자활공제협동조합 추진을 의결했다. 자활공제협동조합 가입 자격은 자활사업 참여자와 조합의 취지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이다. 단체로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기타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조직, 업종별 조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줄임)는<sup>18)</sup>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6월 조직되었다. ‘자활공제조합 추진과제 및 사례’, ‘유럽 공제협동조합의 역사 및 자활공제사업의 의의’, ‘공제협동조합의 미와 추진 방향’ 등 세 차례의 포럼과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열어 학습과 토론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2015년 10월경 연합회에는 46개의 공제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다.<sup>19)</sup> 43개는 지역자활센터에 기반을 둔 공제협동조합이지만, 자활센터와 상관없이 지역이나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설립한 3개 조합(청년연대은행 토닥,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경남 창원 디딤돌금고)도 참가하고 있어

---

18)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의 기구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조직·정책·사업·교육·재정), 사무국으로 편제되어 있다. 권역 모임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경남(부산), 경북(대구)로 구성된다(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팸플릿』. 2).

19)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팸플릿』. 4. 서울 9개, 경기 10, 인천 4, 충북 1, 충남 1, 전북 4, 전남 1, 경북 3, 경남 7, 부산 1, 비자활공제조합 3개이다. 2013년경 자활공제협동조합은 전국에 총 75개였는데(“쪽방촌 ‘희망은행’ 29개월.” 「한겨레신문」. 2013/08/18),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도 많이 있으며, 또한 가입했다가 탈퇴한 조합도 있었다.

명실상부한 공제협동조합의 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현재 46개 조합의 가입자는 8,300명이며, 출자금 33억 원에 누계대출금액 27 억 8,000만 원, 누계대출 인원 5,800명에 이른다. 대출서비스로 인한 파급 효과 즉 자립·자활 지원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지만, 일단 소액대출의 혜택 확대란 측면에서 본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연합회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가입회원인 지역 공제협동조합은 연합회에 매년 일정액(공제조합의 연도별 출자금의 10%)을 출자하고 있다.<sup>20)</sup> 연합회는 크게 보아 공제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컨설팅을 통해 운영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운영지원사업과 회계 및 행정교육, 자활협동운동가 아카데미, 실무자 교육, 임원 교육, 협동조합 교재 발간, 선진지역 연수 등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획득한 이익금은 연합회 활동비뿐만 아니라 단위 공제조합의 운영 비로도 지원되고 있다.

연합회의 가장 주목할 사업은 ‘천원의 행복’ 상호부조사업인데, 이는 한 달에 1,000원씩 내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질병이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를 실비 보상하는 제도이다.<sup>21)</sup> 매월 몇 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시중의 실손보험에 비교하

---

20)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출자좌수를 결정하는데 전년 출자총액의 10/100 이상, 20/100 이내 범위로 출자한다고 되어 있다.

21)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맵플릿』, 6. 즉 타 보험사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중 발

면,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셈이다. 이는 공제조합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합회의 중요한 기능은 단위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시 연합회출자금으로 조합원의 예금(출자금)을 보호한다는 점일 것이다.

연합회는 자활공제협동조합이 ‘자활조직의 프로그램’이나 혹은 ‘지역 사회조직’이냐는 두 가지 노선을 둘러싸고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자활 공제조합을 지역자활센터의 신용사업 조직으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신용사업뿐만 적극적으로 각종 상호부조·공제사업으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지역사회 조직’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전자는 주체와 대상이 자활사업 참여주민으로 국한되지만, 후자는 지역 주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자활센터와 관계없는 서울역 동자동 사랑방 마을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이 연합회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점은 후자의 길이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연대성’(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연대체인 연합회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다. 연합회는 개별 협동조합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기를 방어해주는 보호막이며 개별 조합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만~30만 원, 의료급여 비수급자(차상위)에게는 10만~30만 원의 본인부담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 1) 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부산 연제구)

연제지역자활센터에<sup>22)</sup> 기반을 둔 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은 2010년 3월 8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조합이 태동된 것은 2009년부터이다. 처음 공제협동조합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은 3, 4명에 불과했다(2016년 5월 13일 정덕용 인터뷰). 그러나 2009년 11월에 선진지역 견학 차 성남 해밀협동조합<sup>23)</sup>을 방문하고, 12월에는 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융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 「경과보고」, 『창립총회 자료집』).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9명 가운데 월 가계소득이 65만~75만 원 51명, 76만~90만 원 21명, 91만~110만 원 12명, 121만~140만 원 16명, 141만 원 이상 23명으로, 최저생계비(2009년경 4인 가구 132

---

22) 연제지역자활센터의 모법인은 연제공동체이다. 연제공동체는 1996년 민주노총 노동자후보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생활 속 진보운동’의 필요를 느끼고 ‘주민자치운동’의 일환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물만끌 자활경제공동체 사업,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부산녹색통화 등의 운동을 전개했다.

23) 해밀협동조합은 성남지역 자활센터 소속 자활근로사업단의 활동가들이 2007년부터 계 형태의 공제조합을 만들기로 논의해오다가, 2008년 4월 137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직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실시 이후 법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해밀나눔금고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조합원 250명, 출자금 2억 4,000만 원의 조합으로 성장했다(우미숙, “살림이야기: 자활공제조합 해밀나눔금고,” 「프레시안」 2016/02/05).

만 원, 3인 가구 108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90만 원 미만이 56%에 달했다. 저축 여부 설문에 답한 응답자 116명 중 51%는 저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저축하고 있는 이들도 월 5만 원 미만 27%, 10만 원 미만 53%로 유사 시 대비 저축액으로는 부족한 편이었다. 생활비 부족 시에는 주로 지인으로부터의 차용(38%)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29%)에 의존했다. 평균적인 차용금액은 40만 원 미만 68%, 50만 원 미만 79%였으니, 이후 대출 규정에서 소액대출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연체 금융실태조사』, 2009/12).

2010년에는 떡국 판매대금 70만 원을 종자돈으로 총회 자료집과 통장을 제작했다. 조합원 아카데미, 두 차례의 발의자 모임을 거쳐 마침내 2010년 3월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경과보고」,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창립총회』). 정관 전문에는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소외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매우 희박한 것이 지금의 사회현실이다. 하지만 협동과 나눔의 정신으로 모인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출 자금을 조성하여 경제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신용대출 그리고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라고 경제공동체 결성의 의지와 조합의 목적이 잘 표현되어 있다.<sup>24)</sup>

---

24)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24. 6조에 “이 조합은 정치에 관

정관 제2조에 명시된 조합의 목적은 “① 조합원의 저축성 함양, ② 조합원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고양, ③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를 돋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수입, ② 조합을 후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의 후원금, ③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④ 조합원을 위한 교육사업, ⑤ 조합원을 위한 상호부조사업, ⑥ 조합원 간의 친목도모 활동, ⑦ 사회적 기여 사업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24).

늘품자활공제협동조합 기구는 조합원 총회,<sup>25)</sup>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홍보이사(5명)·재무이사(1명)·교육이사(2명) 그리고 감사(2명)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의 주요 결정기구는 매월 1회 소집되는 이사회로, 중요 사안 즉 대부 신청의 심사 및 결정, 대출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업계획안 및 변경안의 작성 등을 결정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데, 특히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점은 로치넬조합 운영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조건은 ① 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참여자, ②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연제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지역

---

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정치 관여의 금지’를 명시한 것은 늘품이 경제공동체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5)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되는데, 정기총회의 경우 사업연도마다 1회, 회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개최되는데 대개 2월 말에 열린다.

〈표 1〉 늘풀자활공제협동조합원의 구성과 변화

시기	탈퇴	신규	총조합원 수	대출 이용자
2010.3			85	
2010.12	14	23	94	8
2011.12.31	26	50(21)	118(92)	29
2012.12.31	23	46(51)	141	33
2013.12.31	24	38(36)	155	55
2014.12.31	31	12(35)	136	64
2015.12.31	27	20	129	51

주: ① 자료집에서 탈퇴와 신규를 계산하면 총수가 맞지 않아 총조합원 수와 탈퇴자 수는 원자료 그대로 표기하고, 신규 수를 총조합원 수에 맞추어 보정함(괄호 안은 원자료 숫자)

② 총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과 '현재 조합원' 두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현재 조합원'만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2011~2013년에는 '전체 조합원'(괄호 안은 현재조합원), 2014년 이후에는 '현재 조합원'으로 표기함.

자료: 『제3차 정기총회자료집』(2012/02/17). 5, 9; 『제4차 정기총회자료집』(2014/02/21). 10; 『제5차 정기총회자료집』. 10;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12.

주민, ③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및 단체 등 세 범주인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이고 일부 일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사업 비참여자인 일반 주민 가운데에는 연제구 외(外) 거주자 4~5명도 가입되어 있다(2016년 5월 13일 정덕용 인터뷰). 이들은 기존 조합원을 통해 공제조합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가입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조합원 수는 2010년 3월 창립 당시에 85명이었는데, 2015년 말에는 129명으로 증가했다. 신규가입자가 연평균 30명에 달하지만, 탈퇴자도 연평균 20여 명이어서 완만한 증가 추세이다. 탈퇴 원인은 대개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퇴사하면서 조합도 함께 그만두기 때문이다.<sup>26)</sup> 탈퇴와 신규 가입이 겟은 것은 자활센터를 기

반으로 조직된 공제조합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다.

조합원은 1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1회의 금액은 5,000 원이며 일시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조합원의 경우 5,000~5만 원의 액수를 매월 불입하는 방식으로 출자한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정관」.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26). 개인 출자자는 총 출자좌수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인 및 단체 조합원은 예외로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2016년 2월 현재 조합원의 출자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4명 중 월 5만 원 출자자 21명, 4만 원 1명, 3만 원 17명, 2만 원 24명, 1만 원 61명, 5,000원 10명이다. 월 1만 원 출자자 46%, 월 2만 원 18%로 월 1만~2만 원 출자자가 전체 조합원의 64%에 달한다. 가장 많은 출자액을 적립한 조합원은 매월 5만 원씩 70회 출자하여 350만 원을 불입했다. 출자 횟수 면에서 보면, 조합이 출범한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2월까지 총 71회 출자한 조합원이 14명이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조합원 및 출자현황」(2016.2.22 기준).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33-36).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 조합원은 탈퇴 시 15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고지해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의 회수와 출자금 환급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sup>27)</sup> 3개월 이상 출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

---

26) 2016년 5월 13일 정덕용 인터뷰. 예컨대 2010년도 조합의 임원 8명 가운데에서 4명이 퇴사와 동시에 조합을 탈퇴했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제2차 정기총회자료집』. 6).

27) 그러나 조합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반환 처리기간이 지난 후 지급할 수도 있다.

〈표 2〉 늘풀자활공제협동조합의 출자금 현황

(단위: 원)

연도	출자금	탈퇴 반환금	적립자산
2010.12.31	18,170,000	2,770,000	15,400,000
2011.1.31	21,975,000	5,195,000	16,780,000
2012	28,350,000	13,450,000	14,900,000
2013	30,553,596	11,330,000	19,223,596
2014	31,172,000	21,730,000	9,442,000
2015	28,678,000	21,785,000	6,893,000
합계	158,898,596	76,260,000(48%)	82,638,596(52%)

주: 두 자료에서 불일치하는 숫자는 전후 맥락으로 보아 보정함.

자료: 늘풀자활공제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자료집』, 12;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14.

합원 자격의 상실’로 간주했다(늘풀자활공제협동조합, 「정관」 2장 조합원 14, 15조,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25).

〈표 2〉를 보면 창립한 2010년도 말에는 누적출자금이 약 1,540만 원 이었으나 2015년 말에는 8,263만 원으로 5.3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탈 퇴자에게 지급한 누적반환금액(약 7,626만 원)이 누적출자금(약 1억 5,889만 원)의 48%에 달하는 점과 연간 적립자산액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아 조합의 운영이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지나치게 과다한 누적반환금액은 조합의 지속성이란 점에서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다.

---

28) 그동안 (조합 사무원과 조합원에 의한) 3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조합에 대한 신뢰에도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2016년 6월 17일 정덕용 서면 인터뷰). 손실출자금은 연합회의 출자기금으로 보전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단위조합의 금융사고 시 연합회가 보호막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근로단 퇴사자가 지역조합원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29)</sup> 예를 들어 공제조합의 목적과 필요성을 조합원에게 주지시키는 교육과 함께 조합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친목모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도 사업 방향’ 가운데 첫 번째로 전체 조합원과 신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날, 동아리모임 등 친목도모활동과 ‘조합원 의식 향상’을 통해 조직력 강화를 거론한 것은 이러한 당면한 상황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늘푸자 활공제협동조합, 『2016년도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18). 또한 조합원 확대를 위해 ‘1인 이상 조합원 가입시키기’를 장려하고 탈퇴자 관리를 통해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같은 차원일 것이다.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대출사업이다. 대출은 일반대출, 범위 내 대출, 긴급대출, 소액대출, 법인 및 단체조합원 대출 등 5종류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대출은 6개월 이상 10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이면 가능한데, 본인 출자금에 따라 50만~100만 원 대출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 상환해야 한다.<sup>30)</sup> 범위 내 대출은 대출금의 최고한도

---

29) 이에 조합 측에서는 출자금 환급을 원할 경우 조합원 탈퇴보다 소액을 남겨두고 환급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탈퇴 후에는 3개월간 조합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0) 이 대출조건은 원래 “6개월 이상 10회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대출”로만 되어 있었으나, 본인 출자금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루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 2월 이 사회에서 “본인 출자금에 따라 30만 원 이하 출자조합원은 50만 원, 30만 원 이상

를 총출자금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12개월 이내 상환해야 한다. 양자가 출자금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반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불의의 사고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긴급대출과 회전성 소액 자금 대출의 경우 출자금과 관계없이 대출최고한도는 30만 원 이하로 실시한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대출규정」,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31). 이 자율은 대출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니, 일반대출은 연 3%, 범위내대출은 연 1%, 긴급대출과 소액대출은 연 2%로 설계되어 있다(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대출규정」,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32).

한편 법인 및 단체조합원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는 총출자금의 30% 이내로 개인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했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의 대출액이 개인에 비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총자산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율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과 달리 설계했다. 그렇지만 시중 금융권의 기업 대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라 할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단체 모두 대출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 중복대출은 불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며, 법인 및 단체 대출의 경우 1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sup>31)</sup> 대출 승인 시 우선 순위는 '범위 내 대출'이며, 대출신청

---

조합원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로 수정되었다.

31) 창립 초기에는 개인대출 상한액이 50만 원이었고 한 달에 5만 원씩 10개월 균등상환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정을 최대한 고려했다. 그러나 출자금이 적립되고 또 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대출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단체

〈표 3〉 늘풀자활공제협동조합의 연도별 대출사업 현황

시기	전년도 잔여 대출금(원)	대출 건수 개인/법인	대출금 개인/법인	상환금	대출이자
2010		8	2,040,000	360	1,800
2011		29	10,060,000	4,150,000	1,153,200
2012	7,590,000	33	20,580,000	18,172,000	511,110
2013	9,998,000	55	47,120,000	36,415,000	678,086
2014	20,703,000	64	61,300,000	48,738,000	745,293
2015	33,264,000	50/1	50,600,000/ 20,000,000	52,603,000	1,078,948
합계		240	211,700,000	160,439,000	4,168,437

자료: 각년도 총회자료집.

이 많아 자금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액대출’을 우선했다. 이는 많은 조합원들이 대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표 3〉을 보면 창립부터 2015년 말 기간에 총 240건, 2억 1,170만 원의 대출이 실시되었다. 〈표 1〉을 보면 대출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매년 대출 건수가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체 조합원의 47%, 2015년에는 39%의 조합원이 대출을 이용했다. 갈수록 대출사업이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조합원들이 협동금융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자활센터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은 총 1건에 불과하여 대출사업이 주로 개인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적립출자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

---

조합원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 대출상한액이 2,000만 원이며 2년 거치 상환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으로 큰 액수의 대출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15년 말 35개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조사에 의하면, 조합 당 평균 대출인원은 52명, 평균 대출총액은 3,934만 원이었다(‘쪽방촌 ‘희망은행’ 29개월.’ 「한겨레신문」, 2013/08/18). 늘 품의 경우 대출자 수는 평균 수준이지만, 대출액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전년도 사회적 기업 대출금 2,0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환율은 대략 ‘90% 이상’이라고 하는데,<sup>32)</sup> 우리나라 소액금융기관의 상환율 85~9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그라민은행 99%, 미국 ACCION의 96.9%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조복현 2011, 63, 69).<sup>33)</sup>

## 2)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경남 김해)

김해지역자활센터에<sup>34)</sup> 기반을 둔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은 2010년 2

---

32) 2016년 6월 17일 정덕용 서면 인터뷰. 정밀하게 회계장부를 검토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대략의 수치이다.

33) ACCION INTERNATIONAL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개척한 비영리단체이다. 1991년 미국에 진출했는데, 저소득층의 자영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3,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경영 지도와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34) 김해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고 경상남도,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인제대학교가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센터는 자원재활용·청소방역·약손사업단·바른먹거리사업단·의식사업단(이든카페)·도배장판사업단·세차사

월 창립되었다. 원래 자활센터에는 경조사와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상조회가 2004년 3월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상조회를 기반으로 공제조합이 조직되었다.

처음 창립 당시에는 ‘김해디딤돌신용금고’라고 칭했으나, 2012년 2월 ‘김해자활공제협동조합’으로 변경됐다가 2013년 2월 ‘우리가남이가 공제 협동조합’, 2015년 4월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으로 개칭되었다.<sup>35)</sup> 이러한 명칭 변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디딤돌→김해→우리가남이가란 조합 명칭의 변경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됨에 따라 신용금고→공제협동조합→공제조합으로 변화된 사실이다. 즉 창립 초에는 조합조직에 의한 금융기관인 신용금고라고 했지만, 점차 상호부조 공제협동조합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공제협동조합에서 공제조합으로 변경한 이유는 공제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협동조합으로 법인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14년 12월 부로 법에 저촉되므로 공제조합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2016년 5월 27일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 인터뷰).

---

업단 등의 자활근로사업, (유)인제하우징·(유)김해늘푸른사람들·(유)인제베이커리·(유)김해돌봄지원센터·(유)행복한가게 등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김해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안내서』, 2).

35) 김해디딤돌신용금고, 『창립총회자료집』(2010.2.16). 21; 김해지역자활센터 상조회, 『2012년도 정기총회자료집』. 21; 김해지역자활센터 공제협동조합, 『2013년도 정기총회자료집』. 31; 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2015년도 정기총회자료집』. 20.

조합의 명칭은 여러 차례 변동되었으나 정관 제1조에 명시된 조합의 목적은 창립 초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즉 “김해지역자활센터 종사자(초기에는 조합원으로 표기—필자)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힘양하고, 조합 자금의 민주적인 활용으로 회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문화적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내용은 신용대출, 소모임 활동 및 문화지원사업, 교육·출판·홍보사업, 연대사업 그리고 경조금 지급 등이다. 조합 내에 어울걸음(등산동호회), 미소봉사단(봉사모임), 이웃사랑(친목모임) 등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sup>36)</sup> 그러나 조합의 유래가 상조회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인데, 경조금 지급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sup>37)</sup>

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10인으로 구성되어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up>38)</sup> 이사는 자활센터의 각 사업단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업단 소속 조합

---

36) 2015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동아리지원사업비는 총 20만 원이었다(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2015년도 공제조합 세부사업보고」, 『2016년도 정기총회자료집』, 8).

37) 상조사업을 위해 조합원은 매월 1,000원의 회비를 낸다.

38) 이사회는 규정에 대한 변경 심의, 기본재산의 유지 관리,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일반사항, 회원 가입의 승인,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원의 출자 규모 및 회비 문제 등을 심의 의결한다(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우리가 남이가 공제조합 정관」 제4장, 『2016년도 정기총회자료집』).

원의 사정을 잘 알고 사업단 재정운영이 대출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및 간사가 상시적인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이 눈에 띈다. 그러나 사무국 간사에게 직책보조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업 간사는 아니다. 기본적인 대출사업과 교육사업 등 적지 않은 업무를 담당 할 상근 간사가 필요한데, 이를 두지 못하는 것은 가입비 이외에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조합의 운영 경비(인건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일 것이다.

〈표 4〉를 보면 2010년 3월 창립과 함께 상조회원에서 자동적으로 공제조합원으로 된 이(즉 2010년 3월 가입자)는 221명이며, 4월 이후 가입자 135명은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 바우처사업, 기타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조합에 신규 가입한 이들이다. 창립 초인 2010~2011년에는 신규가입자 수가 탈퇴자 수보다 많지만, 2012년 이후에 역전되어 신규가입자 보다 탈퇴자가 더 많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늘 품자활공제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활센터의 각종 사업에 새로 참여하면 조합원으로 가입 했다가 사업을 종료하면 탈퇴하기 때문이다. 즉 조합의 탈퇴와 가입이 센터 사업의 전개 동향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는 기타사업 참가자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업이 끝나면 탈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sup>39)</sup> 이는 자활센터의 각종 근로사업에 참여

---

39) 기타사업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한다(2016년 6월 8

〈표 4〉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원의 구성과 변화

연도	센터의 자활사업 종사자(a)	조합원(b)	b/a(%)	b 종 자활사업 비참여지역주민	탈퇴	신규
2010	477	356	75%	-	36	135
2011	675	433	64%	-	98	113
2012	552	423	76%	-	106	82
2013	441	234	53%	-	76	50
2014	313	203	64%	16	81	26
2015	246	220	89%	28	65	64

주: ① 센터 자활사업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바우처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이 모두 참여하지만, 바우처사업(가사간병도움,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경우 특히 일반인이 많이 참여함.

② 신규와 탈퇴 수는 각 연도별 총회자료집과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회원별 입출금 현황' 엑셀파일이 원천자료이므로 여기에 의거하여 작성함. 2010~2013년에는 명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따라서 조합원 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③ 모든 수치는 당해 연도 말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a는 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자활사업 참여주민 참가현황」, 나머지 항목은 「회원별 입출금현황」 엑셀 파일에 의거하여 계산.

할 경우 공제조합 가입이 당연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자율적 상호부조 원칙에 괴리되며 결국 탈퇴로 결과 되므로 장기적인 면에서 공동체적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6월 현재 조합원은 219명인데 이들의 가입연한을 조사해보면, 2010년 가입자는 61명, 2011년 22명, 2012년 23명, 2013년 21명, 2014년 20명, 2015년 51명, 2016년 20명, 미상 1명 등이다. 이를 보면 약 27% 정도의 조합원이 창립 초부터 가입한 이들이다. 또한 사업을 종료

---

일 김선목 주임 서면인터뷰).

하면서 탈퇴했다가 다시 지역조합원으로 재가입하거나 사업은 종료했으나 탈퇴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이 28명이다.<sup>40)</sup> 정관에 의하면 조합 회원은 “센터 사업 참여주민 및 종사자를 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41)</sup> 그러나 2014년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지역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처음부터 자활사업 퇴사자가 아닌 지역 주민으로 가입하는 이들도 있다. 아직 미세하기는 하지만, 늘풀에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공제조합이 잘 운영된다면 지역 조합으로 확장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된다.

조합의 출자금과 반환금 내역을 조사한 〈표 5〉를 보면 반환금 액수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출자금보다 반환금이

---

40)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윤○○은 2010년 3월 창립과 함께 조합원으로 가입, 인큐베이터 사업 종료와 함께 퇴사했으나 2012년 1월 초에 지역조합원으로 재가입했다. 문○○은 2010년 3월 가입, 2013년 산모도우미를 퇴사하면서 지역조합원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 4월 가입한 공○○은 복지시설도우미로 일하다 퇴사하여 2015년 이후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41) 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정관」(2015.4.8. 개정). 『2016년도 정기총회자료집』. 18. 디딤돌신용금고로 창립한 초기에는 조합원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정회원은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사회서비스, 기타 사업 등)에 참여하는 주민과 김해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조합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 준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일시적 기부를 한 사람, 특별회원은 “본 조합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의 출자금과 반환금 내역

연도	출자금	탈퇴 반환금
2010	30,730,000(308명)	2,420,000(38명)
2011	50,150,000(344명)	13,490,000(96명)
2012	52,480,000(334명)	24,870,000(96명)
2014	38,250,000(203명)	39,688,100(76명)
2015	48,480,000(221명)	31,360,000(51명)
합계	220,090,000	111,828,100(50%)

- 주: ① 2013년은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았음  
 ② 탈퇴반환금 지급은 탈퇴자가 찾아가지 않아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③ 연간적립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한 총회자료집에는 차년도이월금, 적립금으로 표기 방식이 매년 달라 적립금 항목은 표기하지 않음  
 ④ 출자금을 낸 수와 〈표 4〉의 조합원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가입원서를 썼으나 출자금을 내지 않는 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자료: 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각년도 정기총회자료집.

더 많다. 5년간 누적반환금을 보면 무려 총출자금의 50%에 달한다. 늘 품자활공제협동조합 역시 누적반환금이 48%였으므로 공제조합마다 비슷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대출 사업은 2010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자금’과 단체·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대대출’ 두 가지로 실시되었다. 생활자금대출은 50만 원과 100만 원 두 종류가 있는데 조합 가입 6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출자금 1구좌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00만 원 이상 대출 시에는 출자금이 100만 원 이상 되거나 3년 이상 활동을 한 경우라야 가능하다(우리가남이가공제조합, 「우리가 남이가 공제조합 정관」(2015년 4월 8일 개정) 제8장 대출). 연대대출은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및 지역 협동조합만 가능하며, 대출 상한액은

2,000만 원이었다.

2010~2011년에는 생활자금 대출상한액이 50만 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출자금 총액이 2,000만 원이 되면서 대출금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렸다.<sup>42)</sup> 그러나 창립 당시 정관에서 명시한, “운영이 안정되면 최고 200만 원으로의 대출액 상향”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현재의 적립금 상황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면 다수의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상환기한은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최장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금이 대출신청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대대출은 12월 이내 상환해야 한다. 재대출은 대출 상환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늘품이 대출종류별로 3%, 2%, 1%로 차등을 둔데 비해, 일괄적으로 3%를 적용하는데, 특별한 경우 이 사회 심의에 의해 별도로 규정한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납 기간 동안 추가이자 3%를 부과한다.

<표 6>을 보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자금 대출은 2015년 12월 까지 누적건수 226건에 약 1억 5,000만 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대대출은 11건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이루어졌다. 상환율은 대출총액 약 3억 2,000만 원 가운데 미상환액이 총 88만 5,000원에 불과하여 거

---

42) 이는 김해디딤돌신용금고 대출규정(안)(2010.2.16) 제1조 대출한도 규정 “초기에는 출자금의 5배(최고 50만 원)로 하고,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 될 때 최고 100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한다. 이후 운영이 안정되었을 때 최고 200만 원까지 대출금액을 조정한다”란 내용에 따른 것이다.

〈표 6〉 우리가남아가 공제조합의 연도별 대출 현황

연도	생활자금대출		연대대출		합계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2010	10	5,000,000	0	0	10	5,000,000
2011	34	16,750,000	3	65,000,000	37	81,750,000
2012	59	34,500,000	4	61,000,000	63	95,500,000
2013	63	46,000,000	3	40,000,000	66	86,000,000
2014	30	25,300,000	0	0	30	25,300,000
2015	30	24,000,000	1	10,000,000	31	34,000,000
합계	226	151,550,000	11	176,000,000	237	327,550,000

자료: 김해지역자활센터 우리가남아가 공제조합. 각 연도별 『우리가남아가협동조합대출현황표』.

의 10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환율이 높은 이유는 작업장에서 같이 생활하며 거의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2016년 5월 27일 남택주 인터뷰). 공제조합은 개인대출 방식이지만, 그라민은행에서 실시했던 그룹대출과 유사하게<sup>43)</sup> 공동체 성원들로부터 무언의 상환 압박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은 자활근로단에서 퇴사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고 지역조합원으로 전환하여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44)</sup> 갑자기 100만 원이 펼

43)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은 5명이 그룹을 지어 대출을 받는데 먼저 2명에게 대출해 주고 상환이 잘되면 다시 2명에게 대출해주고 다시 상환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1명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44) 예를 들어 2016년 5월 현재 지역조합원인 서○○은 2012년 4월에 50만 원과 2015년 4월에 100만 원 등 두 차례, 김○○은 2012년 1월 50만 원과 2013년 11월 100

요한 경우 대부업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균등상환할 수 있는 점에서 공제조합의 유용성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연대대출은 센터의 자활기업과 연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컨대 2011년도에는 인근 창원취업상조회(500만 원, 1건)와 창원지역자활센터(각 3,000만 원씩, 2건)에 대한 대출이 있었다.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협의회에 500만 원을, 그리고 김해자활센터의 사회적 기업 인제하우징에 3건 총 4,000만 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늘풀과 비교해 사회적 기업과 연대 단체에 대한 대출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 3. 협동금융의 확산과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연대은행 토닥은<sup>45)</sup> 2012년 3월 준비모임이 시작되어 창립멤버 모임, 추진위원회 결성, 회원 모집 등의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창립되었다(청년연대은행 토닥. 「연혁」. 『토닥토닥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 3). 출

---

만 원, 2015년 11월 100만 원 등 세 차례, 윤○○은 2013년 10월 50만 원을 대출하여 조합의 협동금융을 이용했다.

45) 창립 당시 조합명은 '토닥토닥 협동조합'이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고 또한 대구의 토닥토닥조합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 6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온라인 표결에 의해 변경되었다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5 조합원정기총회』(2015.2.7). 12].

자금을 모아 소액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공제조합을 구상한 것은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활동가들이었다.<sup>46)</sup> 공제조합 결성의 계기는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최고은이 32세의 나이에 “생활고와 지병으로” 홀로 죽은 채 발견되어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sup>47)</sup> 이후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은 자구적인 공제조합 조직을 모색하게 되었다.<sup>48)</sup>

토닥은 출자금 적립사업, 금융상호부조사업 이외에 생활상호부조사업, 조합원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동체사업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

---

46)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청년(15~39세)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 사업과 입법활동을 전개하며 청년 세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설문 조사 및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http://youthunion.kr/xe/introduce> 참조).

47) “최고은 작가 사망 전 쪽지로 ‘남은 밥과 김치 있으면…’.” 「매일경제」 2011/2/9; “격정소나타” 작가 최고은, 생활고 시달리다 32살에 요절.” 「서울신문」 2011/2/8; “생활고에 시달리다 서른둘에 요절한 작가 최고은이 우리에게 남긴 것.” 「경향신문」 2011/3/1.

48) 2011년 2월 “쪽방촌에 꽂힌 ‘희망은행’.” 「한겨례 21」 2012년 9월 11일. 2011년 청년유니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상호부조사업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불안정노동청년과 사회안전망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취업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21만 원이고 48.5%는 평균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액대출, 소액저축 등 청년들의 경제자립을 돋기 위한 금융상호부조시스템을 만들고 청년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연대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창립멤버이고 1기 사무국장이었던 조금득(청년연대은행 창립 이사장, 현재 대방동 무중력지대 센터장)과 한영섭(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이사장)·표희철·심수림 등이었다.

〈표 7〉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조합원과 후원회원

연도	조합원			후원회원		
	탈퇴	신규	총수	중단	신규	총수
2013년 2월		100	100			
2013년 말	-	218	318			
2014년 말	51*	85	352**			65
2015년 말	72***	240	520	51	13	73

주: \* 자료집에는 52명으로 되어 있으나 총수를 맞추기 위해 보정함.

\*\* 총회자료집에는 353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후 352명으로 보정한 결과에 따름.

가입신청서를 썼지만 출자금을 내지 않거나 조합비를 내지 않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는 조합원을 빼면 실제 활동 회원(재적조합원)은 303명이며, 총회의 정족수도 이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2016 토토리반상회』, 4, 7; 2016년 6월 8일 이사장 김진희 인터뷰).

\*\*\* 월별 계산 결과는 73명이지만 조합원 숫자를 감안하여 총회자료집에 의거함.

자료: 청년연대은행 토닥, 『토닥토닥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2014/02/22), 6-7; 『청년연대은행토닥 2015 조합원정기총회』(2015/02/07), 5; 『2016 토토리반상회(정기총회)』(2016/01/30), 12.

부설기관으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하여 조합원과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 설계를 돋는 교육과 재무상담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활동이 조합 밖 공간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2015년 10월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어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창립되었다.<sup>49)</sup>

토닥의 조합원 가입 자격은 만 15~39세의 청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조합원은 시간이 지나 제한 나이를 초과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청년연대은행 토닥 정관』(2016.1.30. 개정). 2). 창립 당시의 조합원 수는 총 100명이었다.<sup>50)</sup> 10개월이 지난 2013년 말에 이르러

49)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5 조합원정기총회』, 19;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moneyhabit.kr/about/> 참조.

50) 『토닥토닥협동조합 창립총회서기록』, 『토닥토닥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2014.

319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 말에는 520명으로 증가했다(〈표 7〉 참조).

2016년 5월 현재 517명인데,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활동이 없는 약 70~80명 정도를 제외하면<sup>51)</sup> 실제 의결권을 가진 재직조합원 수는 400여 명이다.

조합원의 직업은, 가입 시 ‘하는 일’(무직 포함)을 밝힌 332명 가운데 대학생(대학원생) 67명, 회사원(출판사, 재무상담사, 마케팅, 물류 사무직, 교직원 등) 72명,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 활동가<sup>52)</sup> 53명, 자영업·프리랜서·전문직업군 46명, 기타 무직(취업준비생)·아르바이트·주부 등 94명이었다. 특히 NGO 활동가들과 문화산업 관련자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창립을 주도했던 청년유니온 활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체조합원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

---

2.22). 7. 현재의 조합원명부를 보면 2012년 5월~2013년 2월 22일(창립일) 기간의 가입자 93명이 계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창립 조합원 가운데 탈퇴자는 7명 정도이다.

51) 토닥 이사장 김진희 전화인터뷰(2016년 5월 27일).

52) 주요한 활동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경기청년유니온, 청년허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신나는조합,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청년녹색당, 희년함께,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자활센터, 한살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중력지대, 스페이스 노아 등이다. 프리랜서 및 전문직업군은 학원 원장, 시간강사, 보충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방송 PD, 영상 제작, 문화기획, 사진작가, 작곡, 시나리오 작가, 연극인, 플로리스트, 전기공사, 영화 감독, 의류판매, 전도사, 조리사, 무역업, 콘텐츠 제작업자 등이었다.

으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민달팽이유니온뿐이다. 민달팽이유니온과는 MOU를 체결하여 연대하고 있으며, 주택 설립 시 토닥에서 대출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연관되어 조합원 수의 증감이 두드러진 지역 공제조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탈퇴자 수도 적고 회원 수도 빠르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조합원은 매월 1구좌(5,000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40구좌(20만 원)까지 출자 가능하다. 지역 공제조합과 달리 토닥은 단체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1구좌(3만 원) 이상(10구좌 한도) 출자해야 한다.<sup>53)</sup> 조합운영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공제조합과 달리, 조합원은 출자금 이외에 조합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매월 1,000원 이상 2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조합의 대출사무와 조합원 결속을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기획을 할 수 있는 전업적인 상근 간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 8〉을 보면 2015년 12월 말경 창립 이후 누적출자금은 약 1억 1,600만 원이며 누적환급금 2,900여만 원을 제한 적립출자금은 8,700여만 원이다. 탈퇴환급금이 누적출자금의 25%로 늘풀이나 우리가남아가 조합의 48~50%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토닥의 탈퇴율이 낮은 것은 목적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출사업은 사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 토닥대출, 범위 내 대출, 조합

---

53) 「청년연대은행토닥 정관」(2016.1.30. 개정). 5.

〈표 8〉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출자금과 환급금

시기	2013.12.31	2014.12.31	2015.12.31
누적출자금(a)	42,027,220	78,830,000	116,445,000
누적환급금(b)	-	21,042,780	29,254,380
적립출자금(a-b)	42,027,220	57,787,220	87,190,620

자료: 청년연대은행 토닥, 『토닥토탁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2014/02/22), 6;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5 조합원정기총회』(2015/02/07), 5; 『2016 토토리반상회(정기총회)』(2016/01/30), 12.

원협동응원대출, 단체조합원대출(단체, 조합원), 결혼격려대출, 재무상담 대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다.<sup>54)</sup> 가장 일반적인 대출 유형인 토닥대출은 상한액이 100만 원이며 조합 활동 참여에 따라 부여되는 토닥 씨앗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었다. 범위 내 대출은 토닥씨앗 5틀을 쌓은 조합원의 개인출자금 130% 한도 안에서 대출해준다. 조합원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닥학개론을 수강하는 신입조합원 교육에 현장

54) 「청년연대은행 토닥 금융협동 규정」(2016/02/19). 토탁대출은 3개월 이상 출자금을 납부하고 토탁씨앗 15틀 이상 또는 출자금 10개월 납부 시 상한액 100만 원까지, 3개월 이상 출자금 납부하고 토탁씨앗 10틀 이상 또는 5개월 이상 출자금 납부 시 5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협동응원대출은 3명 이상의 조합원이 자립의 목적으로 가입 후 5개월 이상 모두 출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조합원 대출은 5개월 이상 출자한 단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개인도 대상으로 했다. 청년세대에게 중요한 결혼을 할 경우 격려 대출도 실시했다. 재무상담 대출은 출자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면 신청 가능한데 대출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무상담 사에게 재무상담을 받는 조건이 전제되었다. 대출금은 총출자금의 9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중이 높다는 이견이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참석해야 하는 규정이 다른 공제조합과 구별되는 점이다.

대출액의 차등을 두는 기준인 ‘토닥 씨앗’은 조합원 교육, 행사, 모임, 기부 등에 참여하면 부여하는데, 조합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협동’의 신용으로도 활용하는 점에서<sup>55)</sup> 조합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된다. 지역자활센터의 공제조합과 달리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온라인 가입 등 개방된 조합원제이므로 조합의 결속력을 높이는 장치가 더욱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금융협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상의 토닥협동이 중요하며 “금융협동과 토닥협동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56)</sup>

〈표 9〉에서 보듯이, 창립 후 2015년 말까지의 누적대출 건수는 211 건에 1억 3,155만 원에 상환기간은 협동응원, 단체, 결혼대출의 경우 24

---

55) 「청년연대은행 토닥토닥협동규정」. 『청년연대은행 토닥 정관』. 31. 토닥씨앗은 조합의총회, 교육, 각종 행사 참여와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지역 별로 혹은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되는 소모임 활동에서도 발생한다.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토닥씨앗은 예컨대 정기총회 참석 시 3점, 신입조합원교육과 의무교육 참석 시 3점, 일반교육이나 워크샵 참석 시 2점, 대출상담 및 재무상담 시 1점, 소모임 활동 시 2~3점, 토토협 다음카페에 게시글 작성 시 1점 등으로 부여된다(「토닥씨앗표」. 『청년연대은행 토닥토닥협동규정』).

56) “소액대출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계모임 같은 곳”이란 표현처럼 단순한 소액대출을 넘어 불안한 한국 청년들의 생활상의 상호부조를 실천하려는 은행토닥의 활동에서 토닥협동은 중요한 부문이다.

〈표 9〉 청년연대은행 토닥의 대출사업

	2013	2014	2015	총 누적
대출건수	28	71	112	211
대출금	7,850,000	57,420,000	6,280,000	131,550,000
일반	7건	1건	-	8건
범위 내	0건	1건	0건	1건
토닥	4	63건	109건	176건
긴급	17	3건	-	20건
결혼	-	2건	3건	5건
단체	-	1건(1,500만)	0건	1건

주: 「일반」 대출은 초창기에 있었으나 이후 토닥대출로 일원화됨.

자료: 『2016 토토리반상회(정기총회)』(2016/01/30), 11.

개월이지만 그 외에는 모두 12개월이다. 모든 대출은 매월 원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토닥, 범위 내, 재무상담, 결혼 명목의 대출일 경우 이자를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재능 기부나 일손 나눔 등을 이자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57)</sup> 자율이자와 非현물 이자의 선택권 부여 역시 조합원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조합 활동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기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인 이자 지정제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경의 총상환율은 89% 정도로<sup>58)</sup> 그라민은

---

57) 그러나 조합원협동은원대출이나 단체조합원 단체 대출의 이자율은 연 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는 이자율이 1~2%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4년에 토닥대출과 범위 내 대출은 자율이자로 바뀌었으며, 이때 새로 신설한 조합원용원대출과 단체조합원 단체 이자는 연 5%로 정했다. 개인대출의 경우 모두 자율이자로 바꾼 것이다 「토닥토닥협동조합 금융상호부조규정」(2013/02/23 제정), 「토닥토닥협동조합 금융협동 규정」(2014/02/22 1차 개정) 참조.

행의 상환율 97~99%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토닥 조합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토닥학개론과 신입조합원 교육강좌뿐만 아니라 많은 기획 강좌나 특강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조합원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타 연주 공연, 요가, 꽃꽂이 소모임과 여행·나들이·영화 감상 등의 조합원 소모임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협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정기적인 조합 소식지 발간으로 조합원의 소통을 매개하고 번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전업적 상근자가 조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sup>59)</sup>

토닥은 창립 시 전국공제조합연합회를 탐방하여 자문을 구했으며,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여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약 600만 원을 연합회에 출자했으며 ‘천원의 행복’ 의료공제서비스에도 실제 활동회원의 약 10%에 달하는 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sup>60)</sup> 한편으로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허브, 청년참여연대 등의 청년단체와 친목을 다지며 연대사업을 전개하기

---

58)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6 토토리반상회』. 11. 2016년 6월 현재 상환율은 82%이다 (2016년 6월 13일 김진희이사장 서면인터뷰).

59) 2016년 7월 현재 조합에는 두 명의 전업 상근자가 사무를 보고 있다. 김진희 이사장은 대외업무와 조합원 관리, 생활협동, 조합 소식지 제작, 지자체 지원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등을 담당하고, 이해진 사무국장은 출자금과 대출금 회계, 대출 신청 접수와 상담 등을 처리한다(2016년 7월 19일 김진희 이사장 서면인터뷰).

60) 현재까지 조합원 2명이 의료비 지원으로 각기 30만 원씩 받았는데 그 공제 혜택을 크게 실감했다고 한다.

도 한다.

창립 후 3년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토닥의 협동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6년 3월 서울시가 청년연대은행 토닥처럼 청년들에게 필요한 관계금융조직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토닥은 청년 세대 협동금융의 새로운 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sup>61)</sup>

#### 4. 결론: 협동금융의 장기적 전망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되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기저에는 금융이 실물경제의 선순환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 투기·이윤의 목적으로 작동하는 약탈적 금융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빈곤층의 자립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 (지원금)을 기반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층이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상호부조에 기반한

---

(61) “서울시, 빛에 허덕이는 청년 위한 ‘청년연대은행’ 설립 지원한다.” 「경향신문」 2016/03/16. 그러나 이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출자금을 내어 조합을 설립하고 상호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를 선정해 이를 단체들이 청년 부채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다.

협동금융을 실천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 연대은행 토타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자활공제 협동조합과 토타의 현황을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규정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에<sup>62)</sup> 의거하여 검토하면서 협동 금융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자활공제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의 탈퇴율이 매우 높고 누적환급금이 누적출자금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점인데, 이는 조합의 장기 지속성이란 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활센터의 사업 기반과 연계된 부분에서 비롯되는데, 주로 단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사업단의 참여자를 일률적으로 조합에 가입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ICA의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체’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 점이다. 조합의 결속과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자활사업단 퇴사 시 지역조합원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이는 가입을 유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근간사를 두지 못하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개 조합운영비를 공동판매사업 수익

---

62) 1995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00주년대회에서 결정되었다.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체, ② 조합원의 민주적 운영(1인1표),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조합원의 공평한 출자와 조합 재산의 민주적 관리), ④ 자율과 독립 (자치에 입각한 자조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 ⑤ 교육, 훈련과 정보 제공, ⑥ 협동 조합 간의 협동(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등이다.

금으로 충당하지만 이는 고정적인 재원이 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합비를 징수하여 상근간사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토닥의 경우, 간사가 조합의 ‘금융협동’을 지속케 하는 공동체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협동’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점이 자활공제조합과 비교해 주목되는 점이다.

자활공제조합과 토닥의 협동금융은 주로 생활자금 대출을 주요 사업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궁극적으로 자립적 생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부조 협동금융이 자활(생산)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적립출자금 액수가 적은 현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립출자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조합원의 사회적 기업 조직과 경영, 기타 생산활동에 대한 대출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정관에 자활센터 소속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정을 명시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개 자활공제조합과 토닥의 상환율이 그라민은행보다 낮은 것은 대출 조합원의 개인적 무책임보다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상환 불능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금융의 지속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합의 공동체적 생산기반으로 자활·자립사업을 지역경제 내에 안착시키는 프로젝트를 모색해야할 것이다.

ICA는 조합원에 대한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지역적·전국적·국제적으로 협동해야 한다고 연대의 원칙을 강조했다. 공제협동조합은 조합의 연대체를 조직하여 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의 공제협동조합

과 토닥은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연간 출자금의 10%로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개별 조합의 금융안전망 구축과 의료공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ICA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토닥은 사회적 지향을 같이하는 지역의 청년단체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협동조합의 연대체만으로 불황을 견뎌내기는 어렵다. 자활공제조합이나 토닥과 같은 협동금융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자활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NGO와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대출사업을 위한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장기적 자활(생산)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은 연합회 차원에서도 어려운 현안이므로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할 시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자활공제조합이나 토닥은 대체로 이후 활동방향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규정에서 금융 부문은 제외되어 있다.<sup>63)</sup> 결국 현행법하에

---

63) ‘협동조합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4절 제93조(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그리고 각 호의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는 주 사업을 40% 정도 하면서 협동금융을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협동금융의 확산을 위해 법을 개정하려면 NGO 와의 연대가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제협동조합이 1인1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점, 출자금 이외에 모든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교육이나 공제사업에 투자하는 점, 연합회나 개별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는 점 등은 모두 ICA 7대원칙을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설립 초창기이므로 조합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합의 지도자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기존 사회적 금융의 주류는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의거한 비영리기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생활상태가 악화되고 단기간에 청년실업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그리 발달하지 않은 한국 금융생태계를 감안하면, 상호부조 형태의 자율적 협동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동금융의 성공은 면대면 관계지향금융일 때에 가능하며, 따라서 신뢰를 기초로 상호부조와 나눔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교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적자생존과 부의 편중을 초래하는 경제패러다임의 종국과 인터넷 네트워

크/재생가능에너지 체제가 융합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창출을 주장하는 한편, 이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종전 2차산업혁명 시기의 중앙집권적 수직적인 거대기업이 아닌 분산협력모델로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토대를 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제는 대형금융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비영리 소액대출 알선기관을 매개로 한 자선행태의 무담보·무이자 금융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는 소규모 사업자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의 지적대로 이러한 경제모델은 이미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상호부조 협동금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수평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실행하는 다양한 행동 방식의 하나로 주목할 부문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자활사업 전개를 위한 자기자본 조성에 의미 있는 자율적 경제운동이라고 생각한다.<sup>104</sup>

## 참고문헌

- 권재열. 2016.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의 모델 모색.” 『증권법연구』 17. 한국증권법학회. 319-348.
- 김해정. 2014.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민사회의 대응.”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1.
- 문진수. 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서울: 북돋움.
- 박종현. 2011. “시장친화형 빙곤대책으로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자기사업, 신용대

- 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 18-1.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47-177.
- 박종현·김낙현. 2015.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경남본부. 1-51.
- 우자와 히로후미(宇沢弘文). 2014.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 차경숙 역. 서우: 파라북스(宇沢弘文. 2003. 『經濟學と人間の心』. 東洋經濟新報社).
- \_\_\_\_\_. 2008. 『사회적 공통자본-진보적 궁공경제학의 모색』. 이병천 역. 서울: 필맥(宇沢弘文. 2000. 『社會的共通資本』. 岩波書店).
- 이찬근. 2009. 『불안한 번영』. 서울: 부키.
- 정태인·이수연. 2013.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조복현. 2011. “한국의 소액금융 실태와 소액금융제도의 발전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29-2. 한국협동조합학회. 39-75.
- 장종이·박종현. 2013.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사회경제평론』 40. 123-159.
- 정영석·이기영. 2013.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경제발전연구』 19권 1호. 한국경제발전학회. 35-81.

## 자료

- “쪽방촌 ‘희망은행’ 29개월.” 「한겨레」. 2013/08/18.
- 우미숙. “살림이야기: 자활공제조합 해밀나눔금고.” 「프레시안」. 2016/02/05.
-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2016/10. 『팸플릿』.
- 늘푸자활공제협동조합. 2009/12. 『연제금융실태조사』.
- \_\_\_\_\_. 2010/3/24. 『창립총회자료집』.
- \_\_\_\_\_. 2011/2/18. 『제1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2/2/17. 『제2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3/2/15. 『제3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4/2/21. 『제4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5/2/27. 『제5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6/2/29. 『제6차 정기총회자료집』.
- 김해디딤돌신용금고. 2010/2/16. 『창립총회자료집』.
- 김해지역자활센터상조회. 2011/2/7. 『2011년도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2/2/6. 『2012년도 정기총회자료집』.
- 김해자활공제협동조합. 2013/2/8. 『2013년도 정기총회자료집』.
- 우리가남이가 공제조합. 2015/4/8. 『2015년도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6/2/17. 『2016년도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각연도. 『우리가남이가협동조합대출현황표』(엑셀파일).
- 청년연대은행 토닥. 2014/2/22. 『토닥토닥협동조합 제1차 정기총회』.
- \_\_\_\_\_. 2015/2/7. 『청년연대은행토닥 2015 조합원정기총회』.
- \_\_\_\_\_. 2016/1/30. 『2016 토토리반상회(정기총회)』.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moneyhabit.kr/about/>

## 인터뷰

2016년 5월 13일 6월 17일 정덕용 연제지역자활센터장(전국지역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서면)인터뷰.

2016년 5월 27일 남택주 김해지역자활센터장 인터뷰.

2016년 5월 27일 김선목 주임 인터뷰.

2016년 6월 23일 이성조 전 부산진구자활센터장 인터뷰.

2016년 6월 3일~7월 19일 김진희 청년연대은행토닥 이사장 서면인터뷰.

## Abstract

# A Study on the Unfolding of Mutual Aid Cooperative Finance and Microcredit

With a focus on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nd  
youth solidarity bank Todak

Oh, Mi il

Pusan National University

Nonprofit microcredit institutions like the Joyful Union and the Social Solidarity Bank based on government or corporate subsidies for supporting the self-reliance of the poor and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founded and are active, but their beneficiaries are in the minority. In such a situation, the economically vulnerable including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and the near poor raise investments themselves to organize cooperatives like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nd youth solidary bank Todak and unfold the practices of mutual aid cooperative finance.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nd Todak are carrying out the ‘cooperation between cooperatives’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which involves conducting medical deduction services and building a financial safety net, which are difficult to do with local unions. The previous foundation-type microcredit businesses place their focus on self-support through start-up loans and consulting, whereas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nd Todak differ in that they set loans for livelihood funds as a major business category. Mutual aid cooperative finance is a sector that must be focused on as an autonomous economic

movement that implements a ‘horizontal and sustainable economic strategy’. based on the community.

■ **Keyword:** Cooperative Finance, Microcredit, Self-Supporting Cooperatives, National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lliance, Youth Solidarity Bank Todak

투고 : 2016/9/30 심사 : 2016/10/11 확정 : 2016/11/2